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식물방역법」 및 거창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 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거창군수 

1.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화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내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 2) 처분내용 : 병 월동처(궤양) 관리로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예찰 강화, 과원 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신고

< 의심 궤양 제거 및 약제 도포방법 >

- ▶(사전예방) 궤양증상은 병원균의 월동처 및 서식처로 정지, 전정시 제거
- ▶(제거방법) 궤양증상 가지로부터 40cm 이상 아래로 절단, 궤양이 나무 밑동, 주간에 있거나 감염된 나무가 3년생 이하의 묘목이면 나무 전체 제거 권장
- ▶(약제도포) 절단 부위로부터 병원균 침입을 막기 위해 도포약제를 골고루 바르는 것을 권장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4) 처분사유 : 궤양 제거를 통한 과수화상병 발병 및 전파 가능성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로 농가가 준수해야 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제도화하여 실행력 강화,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방지 및 농가 책임부여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2.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내 과원경영자, 과수농작업자(전문·일용인력), 관련 산업 종사자
 * (관련산업 종사자) 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원협·산림조합 관계자 등
 (대상 과수작업 5종) 전정작업, 적화작업, 적과작업, 가지유인작업, 봉지씌우기작업
- 2) 처분내용 : 농작업 전후, 이동 간 개인소독 및 장비소독 의무화

< 농작업자 개인소독 실시요령 >

- ▶(소독대상) 작업복, 신발, 장갑, 모자, 마스크, 작업용 소도구(칼, 톱, 낫, 전정가위 등)
- ▶(소독방법) 과원 출입 전·후 작업복, 신발, 장갑, 등 외부 접촉부위 소독액 살포, 소형도구 침지소독, 중대형 장비 분무 소독

< 농작업 전후 장비·도구 소독요령 >

구 분	방역조치	공통사항
소형도구 (전정가위, 톱 등)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 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분 이상 담금	화염을 이용한 소독 시 휴대용 화염기를 이용
중대형 장비·도구 (사다리, 예초기, 경운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기, 가지피씨기 등)	분무기로 외부 접촉 부위에 소독액이 흘러 내리도록 골고루 살포	20초 이상 가열소독 (※ 화재안전에 특별 유의)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처리지침」

- 4) 처분사유 : 신규 발생지역 증가 및 기 발생지역 다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 방제를 위한 예방 수칙(방제) 의무화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 00:00부터

3.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1) 처분당사자 : 과수화상병 발생과원을 방문하고, 거창군내 거주식물 과원을 출입한 자
- 2) 처분내용 :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 이동·유출 및 거창군내 유입금지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37조의2, 제50조제1항
- 4) 처분사유 :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전염원 이동 및 유입 차단으로 거창군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시행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4.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내 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 타 과수원 방문자제, 농작업 하는 사람(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비치

< 농작업 출입대장 기록내용 >

- ▶(이동사항) 일시, 인원, 이동 동선(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작업내용) 모든 과수 농작업(전정, 예초, 관수, 시비, 적과(화), 유인, 봉지작업 등)
- ▶(소독실시내역) 대인 및 대물 소독 여부, 소독방법 등 기재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4) 처분사유 : 과원·지역 간 과수화상병 확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관리·발생원인·확산경로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시행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5.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타과원 출입금지
단, 다과원을 소유한 농장주가 타지역에 소재한 본인의 과원을 출입할 시 이동사항 기록 및 철저한 개인소독, 장비소독 의무화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4) 처분사유 : 지역 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교류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크므로,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이 필요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6.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사과·배·복숭아 과원 경영자
- 2) 처분내용 : 해당 과종의 신규 묘목 반입 시 농업기술센터(또는 읍·면) 신고, 신규 식재 묘목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즉시 신고

< 방역수칙 >

구분	의무 사항
묘목 신고 등록	▶ 신규 도입 묘목의 신고 및 구매 이력등록
의심주관리	▶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즉시 신고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4) 처분사유 :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종자·묘목을 통한 병원균의 미발생지역 유입·확산 가능성 차단을 위한 조치 시행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7.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 1) 처분당사자 : 거창군 내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3)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4) 처분사유 :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가가 준수해야 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제도화하여 실행력 강화
- 5) 처분기간 : 2021. 6. 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5.(목) 00:00부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처분을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경감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처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음

참고 1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문의처

연번	조치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화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940-8240
2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3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4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5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금지			
6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7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8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안내	거창읍 산업계	김은정	940-7303
9		주상면 산업계	박태진	940-7393
10		웅양면 산업계	지명호	940-7442
11		고제면 산업계	유상현	940-7492
12		북상면 산업계	이운환	940-7543
13		위천면 산업계	최용인	940-7592
14		마리면 산업계	조창현	940-7641
15		남상면 산업계	신영환	940-7692
16		남하면 산업계	이현덕	940-7743
17		신원면 산업계	송용인	940-7792
18		가조면 산업계	김준	940-7842
19		가북면 산업계	정태은	940-7892

참고 2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제36조(방제명령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 ①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손실보상)>

-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참고 3

손실보상 경감 기준

<농촌진흥청 방제방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손실보상 경감기준)>

- ①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경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손실보상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율의 적용은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2017.12.27.>

손실보상 경감기준(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방 제 사 유	경감률(%)	비 고
○ 공적방제 명령 원인과 관계없이 방제를 이행한 사람	-	
○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사전방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25	
-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	50	
- 고의가 있는 사람	100	
○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물에서 외래병해충이 발생되어 공적방제 명령을 받은 사람	100	고발 조치

1. 「농어업의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판매회사와는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서 구성된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단,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결정 없이 손실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3. 경감률은 방제비용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에 적용한다.

참고 4

농작업 출입 및 작업 일지

출입일시		출입 및 작업일지				
월 일	과수원 소재지	거창군 읍면 리 번지				
	농작업	작업자 성명	외 명(연락처:)			
		작업사항	전정(), 적과(), 적화(), 가지유인() 기타()			
		작업자 현황	관내	자가(), 작목반(), 기타()		
			관외	주 활동지역() 금년도 작업지역(시군) 전체()		
		이동사항	출발() → 경유() → 도착()			
	소독	소독자 성명	외 명(연락처:)			
		소독대상	* 작업복, 신발, 장갑, 모자, 마스크, 대형농기구, 소형농기구(전정가위) 등			
		소독방법	* 소형도구 침지소독, 중대형 장비 분무소독, 화염소독 등			
	월 일	과수원 소재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농작업		작업자 성명	외 명(연락처:)			
		작업명	전정(), 적과(), 적화(), 가지유인() 기타()			
		작업자 현황	관내	자가(), 작목반(), 기타()		
			관외	주 활동지역() 금년도 작업지역(시군) 전체()		
		이동사항	출발() → 경유() → 도착()			
소독		소독자 성명	외 명(연락처:)			
		소독대상	* 작업복, 신발, 장갑, 모자, 마스크, 대형농기구, 소형농기구(전정가위) 등			
		소독방법	* 소형도구 침지소독, 중대형 장비 분무소독, 화염소독 등			

